

2024년도 국가철도공단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

친환경·저탄소 철도교통 체계 구축 및 철도시설관리를 통해 철도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및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직무설명서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단위	직급	인원	응 시 자 격
전체 모집단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1] 참조)• 응시연령 및 학력사항은 별도제한 없음
계약직	철도차량 기관사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젤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실무수습 인증구간(선)* 1개 이상 보유자- 철도차량운전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정한 신체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6] 참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4에 정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7] 참조) <p>* (인증구간(선))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 강릉선</p>
	수송장비차량 정비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철도차량 정비업무 종사자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장비차량 수송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 보유자로, 철도 운전·역무·수송업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정한 신체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6] 참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13에 정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7] 참조)

* 계약직은 권역별(근무지) 채용으로 숙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무지를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수행업무 및 채용기간

수행업무

- (철도차량기관사) 종합검측차 및 (디젤)기관차 운전업무
- (수송장비차량 정비원) 기관차·화차 정비업무
- (장비차량 수송원) 건설 및 수송장비차량 입환 업무

채용기간 : 2025. 1월 ~ 2025.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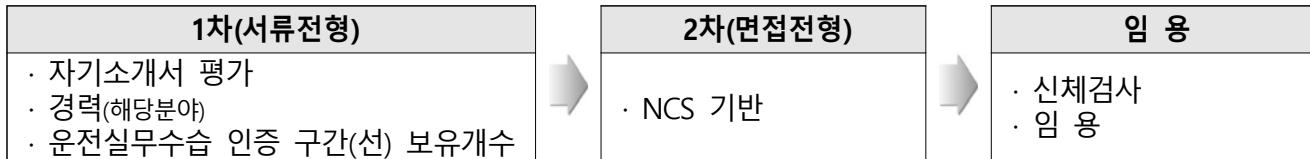
임용시기 : 2025. 1월 초 임용(예정)

- 1) 근로계약은 사업기간 중 1년 단위(회계연도 기준)로 체결
- 2) 공단 근무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약을 연장/해지할 수 있음.
- 3) 근무지역은 시설장비사무소이며,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384)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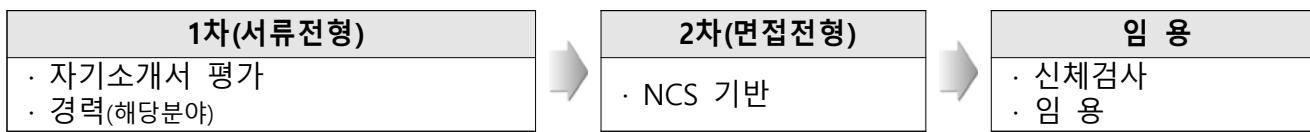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고, 각 단계별 득점은 합산되지 않음
- 계약직-철도차량 기관사



- 계약직-수송장비차량 정비원



- 계약직-장비차량 수송원



□ 전형일정

- 채용 공고 : 2024.11.15.(금)
- 전형 단계별 일정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11.22.(금) 9:00 ~ 11.29.(금) 18:00	12.10.(화)	12.16.(월) *장소: 대전 또는 해당권역	12.27.(금)

* 상기일정, 장소는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등에 공지

4 입사지원서 접수

□ 지원방법

- 국가철도공단 채용 홈페이지 (<https://2024kr3.kpcice.kr>) 온라인 접수 (자기소개서 포함)
- * 별도의 지원서 교부는 없으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 **자기소개서 항목은 [붙임10] 참고**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지원 바라며, 접속 장애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결과를 최종 확인
- ☞ **입사지원서 제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 확인**

5 전형별 주요내용

□ 서류 전형

-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자기소개서 표절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전체 작성 분량의 30% 이상 표절* 시 과락 처리
 - * (예시) Chat GPT 등 생성형 AI 또는 타인의 자기소개서 복제 등
-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채용분야별 자격사항, 경력사항, 가점사항 등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 실시
☞ 각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 전형 : NCS 기반 종합면접 시행

- NCS 기반 통합면접(100%) :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가점포함) 100%를 반영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경력기간 순으로 선발

□ 가점적용 기준 : 전형별 가점기준은 [붙임3]에 따라 적용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자격기준 : 계약직-철도차량기관사, 계약직-장비차량 수송원 모집단위의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불합격 기준([붙임6], [붙임7])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2024.11.29.) 결과가 유효한 경우 인정

* 철도차량 기관사, 장비차량 수송원 모집분야 최종합격자의 경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하여야 하나 채용 예정 직과 같은 기준의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임용예정일('25.1월초)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신체검사 판정서, 적성검사 판정서로 인정

□ 전형별 합격자 확인 : 채용홈페이지(<https://2024kr3.kpcice.kr>)에서 로그인 후 개별 확인

6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방역 세부수칙'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따라 모든 수험자는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하고, 시험실 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

□ (필요 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아래와 같이 감염병 예방 절차 등을 시행할 예정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 의무 착용
-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의무 착용
- 이외 일반수험자들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1m 이상 거리 유지

*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방역지침 등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상세 안내 예정

7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은 제외)을 기준으로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 * (졸업예정자)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증빙서류 제출요구 시기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적용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시
- **적용방법** : 전형별 합격자 중 이전지역인재가 목표비율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 *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자는 제외
- **적용 모집단위** : 금번 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8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은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및 해외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 * (졸업예정자)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증빙서류 제출요구 시기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적용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시
- **적용방법** : 전형별 합격자 중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목표비율 35%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 *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자는 제외
- **적용 모집단위** : 금번 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 **목표비율** : 면접 대상인원의 30%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 **적용단계** :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시
- **적용방법** : 필기전형 결과 특정 성별 합격자가 모집단위별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 *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자는 제외
- **적용 모집단위** : 금번 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10 제출 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면접 대기장소에서 원본 제출

*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의 익일 18시까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발급 및 입증 가능여부 (ex 중소기업 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발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 가점 증빙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장애인	장애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 본인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다문화 가족의 자녀	<p>①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 취득 전 - 지원자 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외국인)의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p> <p>②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 취득 후(2008. 1. 1. 이전)에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 - 지원자 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중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 제적등본 ※ 단, 제적등본상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이전 국적이 표시되어야 함 - 부 또는 모 중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주민등록초본</p> <p>③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 취득 후(2008. 1. 1. 이후)에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 - 지원자 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중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어야 함</p> <p>☞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p>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중소기업근무경력	중소기업확인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번호 확인 가능한 취득사항 확인서 사본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력	인턴경력증명서 * (2023년 인턴 및 우수인턴) 인턴수료(만근)자에 한해 경력 인정	

* 중소기업근무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상호 교차 검증하여 공통된 경력만 유효경력으로 인정함

☞ (중소기업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근무기관 관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중소기업 근무경력과 경력평가에 해당하는 경력이 동일한 경우,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직급), 발급담당자 연락처 및 근무기관 관인 날인 반드시 기재

- 자격 증빙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자격증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번호 확인 가능한 취득사항 확인서 사본 ※ 단, 계약직 철도차량기관사 분야 지원자의 경우, 운전실무수습 인증구간(선)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자격증 뒷면 사본까지 제출	해당자 (철도차량 기관사, 수송장비차량 정비원, 장비차량 수송원)
신체검사	신체검사 판정서	해당자 (철도차량 기관사, 장비차량 수송원)
적성검사	적성검사 판정서	해당자 (철도차량 기관사, 수송장비차량 정비원, 장비차량 수송원)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 (철도차량 기관사, 수송장비차량 정비원, 장비차량 수송원)

- 1) 「경력평가」는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에 대하여 평가
- 2) 경력은 각 모집단위별 해당분야인 철도차량 기관사(철도차량운전), 수송장비차량 정비원(철도차량정비), 장비차량 수송원(철도운전·역무·수송) 경력에 한하여 평가
- 3)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교차검증을 거쳐 공통된 경력만 유효경력으로 인정
 - ☞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직급), 발급담당자 연락처 및 근무기관 관인 날인 반드시 기재
 - * 근무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이 곤란한 경우(ex 담당업무 미표기)에는 [붙임9]의 양식을 활용(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기관의 확인(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 가능

- 기타 증빙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병역증명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에 병적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적기록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남성 지원자

11 근로조건 등

- 보수는 공단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궤도장비기술원(계약직) : 연 3,150만원 수준 (세전금액, 궤도장비기술원 6급(기간제) 1호봉 기준)

- 근무형태는 주 5일 전일제(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세부사항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름

12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사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7년간 우리 공단의 입사지원을 제한합니다.
- 지원자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동일한 입사지원서 발견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관련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전형 및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출신학교 유추가 가능한 학교 이메일 학교가 위치한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자기소개서 표절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전체 작성 분량의 30% 이상 표절* 시 과락 처리**
* (예시) Chat GPT 등 생성형 AI 또는 타인의 자기소개서 복제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과는 불합격 기준([불임6], [불임7])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2024.11.29.) 결과가 유효한 경우 인정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지원 바라며, 접속 장애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결과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부정행위 등 처리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채용비위 등을 통해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공단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임용 이후)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합격자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이메일(kr@kpcice.or.kr)을 통해 3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개별적인 피드백 등
- 응시자, 시험출제자 및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를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

□ 면접전형 응시 및 증빙서류 제출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기간 만료 전 여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신분증 대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명시)"을 제시한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 1차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하고,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사항은 증빙가능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서류의 차이로 인해 점수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면접전형 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사항

- 공고문에 제시된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형별 사전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일정변경 등 사유발생시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시 면접전형 장애편의지원 제공 요청(관련 증빙서류 첨부 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시행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에 따른 결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모집단위별 추가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차기 채용 공고일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채용 공고일까지 추가합격자를 결정
-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자는 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 사전등록 및 임용등록을 완료하여야 임용이 가능하며,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합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의 익일 18시까지 임용의사를 밝혀야 하며,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시 재학 및 자직 등 여부에 관계없이 '25. 1월 초 임용일자에 맞추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용 일정은 공단 사정에 맞춰 시행 예정
- 최종합격자라도 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채용대상자 제외)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붙임8] 양식 활용)하며,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청구제외 대상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채용 프로세스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되오니,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3 문의처

-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
- 채용 헬프데스크 (전화번호: 02-3210-3821, 3824)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11시 30분~12시 30분은 미운영)

2024년 11월 15일



붙임 1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 2

입사지원 시 필요한 분야별 자격증

□ 계약직(철도차량 기관사, 장비차량 수송원)

구분 분야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계약직 (철도차량 기관사)	디젤차량운전면허
계약직 (장비차량 수송원)	철도운송산업기사

□ 계약직(수송장비차량 정비원)

※ 지원자격 :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아래 표에서 명시한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이외는 인정하지 않음

구분 분야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 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 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전자응용, 소방 『기능장』 전기, 전자(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소방설비 『기능장』 전기, 전자(전자기기)	『산업기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철도 신호,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소방설비	『기능사』
전자	『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기사』 전자 『기능장』 전자(전자기기)	『산업기사』 전자	『기능사』
기계	『기술사』 기계(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공조 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기계안전,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 설비, 산업계측제어, 소방	『기사』 일반기계, 공조 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 기계설비(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열관리), 건축 설비, 기계설계, 궤도장비 정비, 소방설비, 자동차정비 『기능장』 건설기계정비, 금형제작, 기계가공, 용접, 철도차량정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판금제작	『산업기사』 기계조립(기계 가공조립),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 차량(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 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 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설비(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작(판금, 제작), 건축설비, 컴퓨터 응용가공, 철도운송, 궤도 장비정비, 에너지관리(열관리, 보일러), 소방설비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술사』 차량기술사	『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장』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불임 3

전형별 가점기준

구 分	우대사항	적용전형		부여가점 (만점기준)	비 고
		서 류	면 접		
특 별 가 점	취업지원 대상자(법정)*	○	○	5% 또는 10%	관련법률에 의한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가점은 시간선택제 채용에 한함)
	장애인	○	○	5%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	5%	
	다문화가족의 자녀	○	-	5%	
	북한이탈주민	○	-	5%	
	경력단절여성	○	-	5%	
	자립준비청년	○	-	5%	
일 반 가 점	한국사 능력검정	○	-	5%	3급 이상
	중소기업 근무경력	○	-	2%	실근무경력 만3년이상에 한함
자격증 가점	전문자격증 보유자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공단이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응시한 자에 한함
	일반자격증 보유자	-	○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	2023년 인턴	우수인턴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2%	인턴수료(만근) 후 2년이내 1회
		인턴수료자	○	서류전형 5%, 필기전형 2%	인턴수료(만근)자에 한함

- 모든 가점은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 특별가점 내의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특별가점으로 인정
 - 일반가점, 자격증가점, 청년인턴가점 내의 각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해당가점으로 인정
 - 특별가점, 일반가점, 자격증가점, 청년인턴가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여 인정
 - 청년인턴 가점은 우리공단 인턴수료(만근)일로부터 2년간 부여하되, 우수인턴의 우대가점은 인턴수료(만근) 후 2년 이내 1회로 한정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상한제 적용(30%)

○ 가점 적용기준

구 분	우대사항	가점 적용기준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특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의 3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일반 가점	한국사 능력검정	-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중소기업 근무경력	- 실근무경력 만3년 이상	
자격증 가점	전문자격증 보유자	- [붙임4] 가점인정 자격증에 한함	
	일반자격증 보유자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	2023년 인턴	우수인턴	- 인턴수료(만근)일로부터 2년간 부여(단, 서류면제는 2년 이내 1회)
		인턴수료자	- 인턴수료(만근)일로부터 2년간 부여

불임 4

가점인정 자격증

- 적용분야: 계약직¹⁾-철도차량 기관사, 수송장비차량 정비원, 장비차량 수송원

구분 분야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공통	<p>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p> <p>[기술사] 건설안전, 품질관리, 공장관리, 교통, 소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전자계산기조작응용), 지적</p> <p>[기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 품질경영(품질관리, 공정관리), 교통,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작응용, 지적, 빅데이터 분석, 정보보안</p> <p>[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 품질경영,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지적, 정보보안</p> <p>[기능사] 정보처리, 지적</p>

* () : 명칭변경 및 통폐합된 자격증

- 1) 계약직: 공통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가점 인정

불 임 5

서류전형 심사기준

1. 계약직(철도차량 기관사)

평가항목	배 점	평가기준	비 고
자기소개서	30점	- 지원동기 (10) - 입사 후 계획 (10) - 직무능력 (10) * 항목별 배점편차 1점	※ 전문 용역기관에서 채용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시행
경력 (해당분야)	60점	- 7년 이상 (60) - 5년 이상 ~ 7년 미만 (55) - 3년 이상 ~ 5년 미만 (50) - 1년 이상 ~ 3년 미만 (45) - 1년 미만 (40)	※ 인정범위 (사업장) : 국가,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5인 이상의 사업장 ^{주1)} ※ 인정범위 (해당 직무분야) : 철도차량운전
운전실무 수습인증 구간(선) 보유개수 ^{주2)}	10점	- 3개선 이상 (10) - 2개선 (7) - 1개선 (5)	※ 인정범위: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 강릉선
계	100점		

주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교차검증을 거쳐 공통된 유효경력으로 인정

* 근무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이 곤란한 경우(ex 담당업무 미표기)

[붙임9] 서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관의 확인(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 가능

☞ 경력점수는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하여 평가

※ 예시, 5년의 해당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경력 3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3년을 제외한 2년에 대해 경력점수 부여

주2) 운전실무수습 인증구간(선)은 인증구간 대표코드 구간내용 중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 강릉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예시1) 대표코드 AQ003 및 AQ004 인증구간 소지자의 경우, 경부고속선(평택연결선~오송), 경부고속선(평택연결선~부산) 인증구간에 대하여 경부고속선 1개선으로 인정

※ 예시2) 대표코드 AQ001 인증구간 소지자의 경우, 경부고속선(평택연결선~부산),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인증구간에 대하여 2개선으로 인정

2. 계약직(수송장비차량 정비원)

평가항목	배 점	평가기준	비 고
자기소개서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동기 (10) - 입사 후 계획 (10) - 직무능력 (10) * 항목별 배점편차 1점 	※ 전문 용역기관에서 채용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시행
경력 (해당분야)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이상 (60) - 5년 이상 ~ 7년 미만 (55) - 3년 이상 ~ 5년 미만 (50) - 1년 이상 ~ 3년 미만 (45) - 1년 미만 (40) 	※ 인정범위 (사업장) :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5인 이상의 사업장 ^{주1)} ※ 인정범위 (해당 직무분야) : 철도차량정비
자격증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기능장 (10) - 기사 (7) - 산업기사 (5) 	※ 직무관련 자격증 1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계	100점		

주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교차검증을 거쳐 공통된 유효경력으로 인정

* 근무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이 곤란한 경우(ex 담당업무 미표기)

[붙임9] 서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관의 확인(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 가능

☞ 경력점수는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하여 평가

※ 예시, 5년의 해당경력이 있는자가 "해당경력 3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3년을 제외한 2년에 대해 경력점수 부여

3. 계약직(장비차량 수송원)

평가항목	배 점	평가기준	비 고
자기소개서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동기 (10) - 입사 후 계획 (10) - 직무능력 (10) * 항목별 배점편차 1점 	※ 전문 용역기관에서 채용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시행
경력 (해당분야)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이상 (70) - 5년 이상 ~ 7년 미만 (65) - 3년 이상 ~ 5년 미만 (60) - 1년 이상 ~ 3년 미만 (55) - 1년 미만 (50) 	※ 인정범위 (사업장) :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5인 이상의 사업장 ^{주1)} ※ 인정범위 (해당 직무분야) : 철도 운전 · 역무 · 수송
계	100점		

주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교차검증을 거쳐 공통된 유효경력으로 인정
- * 근무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이 곤란한 경우(ex 담당업무 미표기)

[붙임9] 서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관의 확인(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 가능

- ☞ 경력점수는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하여 평가

※ 예시, 5년의 해당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경력 3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3년을 제외한 2년에 대해 경력점수 부여

불임 6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 적용분야: 계약직-철도차량 기관사, 장비차량 수송원

※ 채용 예정 직과 같은 기준의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유효기간 내(임용예정일 기준)에 있는 경우는 해당 신체검사 판정서로 인정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 항목	불합격 기준	
	최초검사 · 특별검사	정기검사
가. 일반 결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 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2)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인 고혈압증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나. 코 · 구강 · 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 · 구강 · 인후 ·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 · 구강 · 인후 ·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3) 만성 폐쇄성 폐질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만성 천식증,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마. 순환기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심부전증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 (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3) 심한 방실전도장애4) 심한 동맥류5) 유착성 심낭염6) 폐성심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 (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3)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전도장애4)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동맥류5)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6)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7)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바. 소화기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검사 항목	불합격 기준	
	최초검사 · 특별검사	정기검사
	3) 거대결장, 계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1) 만성 신장염 2) 중증 요실금 3) 만성 신우염 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 고도의 요도협착 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신장염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내분비 계통	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3) 애디슨병 4)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 내분비질환, 대사질환(통풍 등)
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	1) 혈우병 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5) 진성적혈구 과다증 6) 백혈병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우병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재생불능성 빈혈 4)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5)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과다증 6)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혈병
차. 신경 계통	1) 다리 · 머리 · 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겉지 못하는 경우 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 머리뼈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 전신성 · 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 만성 진행성 · 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1) 다리 · 머리 · 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겉지 못하는 경우 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 머리뼈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 전신성 · 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진행성 · 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검사 항목	불합격 기준	
	최초검사 · 특별검사	정기검사
카. 사지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파. 눈	1)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1)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하. 정신 계통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 불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 장애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 불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불 임 7

적성검사 불합격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련)

○ 적용분야: 계약직-철도차량 기관사, 장비차량 수송원

※ 채용 예정 직과 같은 기준의 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유효기간 내(임용예정일 기준)에 있는 경우는 해당 적성검사 판정서로 인정

검사대상	검사항목		불합격기준
	문답형 검사	반응형 검사	
철도차량 기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관련)

검사대상	검사주 기	검사항목		불합격기준
		문답형 검사	반응형 검사	
장비차량 수송원	최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 일반성격 - 안전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 - 복합기능 - 선택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및 기억력 - 시각변별 - 공간지각 - 작업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 및 행동력 - 추론 - 민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정기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 일반성격 - 안전성향 -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 - 복합기능 - 선택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및 기억력 - 시각변별 - 공간지각 - 작업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 및 행동력 - 민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특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 일반성격 - 안전성향 -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 - 복합기능 - 선택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및 기억력 - 시각변별 - 공간지각 - 작업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 및 행동력 - 추론 - 민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비고:

1.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특별검사의 복합기능(운전) 및 시각변별(관제/신호) 검사는 시뮬레이터 검사기로 시행한다.
4. 안전성향검사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 진단결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결과로 할 수 있다.

불 임 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수협번호
	이메일(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포함)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이메일(kr_recruit@kr.or.kr)로 제출

불 임 9

경력(재직)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	--	------	--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급)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해당분야 경력사항 (담당업무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발급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불 임 10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항목

계약직(철도차량 기관사, 수송장비차량 정비원, 장비차량 수송원) 모집분야

연번	자기소개서 문항	비 고
1	본인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단에 지원한 동기를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2	우리공단 입사를 위해 준비한 노력과 입사 후 앞으로의 목표를 설명해주세요.	500자 이내
3	프로젝트나 업무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500자 이내